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농27131-37 01	시행상 특별취급	지신과	모사전송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 ③ 1.	1990. 1. 12 농축과장 법무장관(하일) 1990. 1. 12 접수 1990. 1. 12 FAX용지 1990. 1. 12 고시·공고 1990. 1. 12 제 10 호		
수신처 보존기간	3년			
시행일자	90.1.12.			
보조 기관	농축과장: 전결 농산개발: [서명]			
기안책임자	박우준 (이4성)	협조 기관		
경유 수신 참조	추안참조	발신 명외	시	지
제 목	비료관속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제 1 호 (대부결재)				
1. 감성27131~1816 (89.12.5) 호 및 농축27131~1511 (89.12.11) 호와 관련됨이다.				
2. 제일제당(주)에서 생산한 제3종부갑비료의 10개 품목에 대하여 89.10.31 관용용시료를 받쳐 즉위농업자재 검사소장에게 성분검사의뢰한바				
3. 비료의출이 10개 품목은 가운이상이고 제3종부갑비료 10-0-2 품목은 가운미출이라는 통보가 있어 행정처분을 위한 취문을 실시할바 즉위농업자재 검사소와 검사방법칙이에서 발생할것				

1505-25(2-1) 일(1)갑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85. 9. 9. 승인 "내가야권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가 40-41 1988. 6. 2.

이러는 사실이 있으나 24차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4. 비로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증빙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와 비로관속업무 처리요령 제8조 제1항 "별첨 1"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과 같이 증류목에 대하여 영업장기 (3개월) 취부코자 함이다.

제2항

수신 장사주 가양종 92 제발제항(주) 대표이사 안기환 제북 관은길

1. 검생 27131-1816 (89. 12. 5) 호 및 농축 27131-1511 (89. 12. 11) 호와 관련됨이다.

2. 차이제류인 제3종복합비로 10-0-2 에 대하여 관속 용이코를 받쳐 주류업자재 검사소장에게 검사의뢰한바 가양미갈 비로로 통보되어

3. 비로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비로관속업무 처리요령 제8조 제1항 "별첨 1"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과 같이 행정취부 하고 영업장기 기간중 비로를 생산하는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공영관 리 및 주취검사에 취거를 기하여 여사할 수려가 재발하는일이 없으

목 차에기 바깥가리 .

가. 행정취부내용

1) 비료의종류및수량 : 제3종부합비료 10-0-2

2) 시비내용 : 우리황산 기준성분양 조화

• 보 증 : 0.5% 이하

• 검사결과 : 0.536%

• 조 화 : 7.2%

3) 행정취부 : 영법정기 3개월 (90.1.12 ~ 4.11)

7.2% ※ 시비분이면 행정심판법 제의한 예외를 발인시행

제3호

수 선 수선취부조

제 목 출 은 권

우리시황내 제1제장(구)에서 생산한 제3종부합비료 10-0-2 종류에 대하여 관측검사결과 기준이합비료로 통보되어 별첨 공고문과출이 행정취부취부기 통보(보고) 함다.

첨 부 공 고 문 1 부

수선취 농림수산부장관(비료외장), 42-18, 농림청농장.

취업준비시험소장, 능력증상리장, 471-22

제4안

수신 공보환

제목 시보게재의뢰

1. 본취업의뢰가 시보게재의뢰 크오리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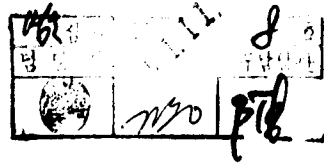
가. 시보게재구분 : 공 고

나. 게재명 : 비로한숙립사 결과에대환 행정취부

다. 법조근력 : 비로한리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조

취부 공고(안) 3부 끝.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16호

비료단속 검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와
비료단속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1. 12

서울특별시 장

1. 허가번호 : 01-가-복합3-2
 2. 허가년월일 ; '83. 2. 16
 3. 상호 및 대표자 ; 제일제당(주)대표이사 안 시 환
 4.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92
 5. 대표자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 64-7
 6. 비료의 종류 및 품목 : 제3종복합비료 10-0-2
 7. 영업정지기간 : 3개월('90.1.12- 4. 11)
 8. 영업정지사유 : 유리황산 기준성분량 초과
- 가. 보 증 ; 0.5%이하
나. 검사결과 : 0.536%
다. 초 과 : 7.2%